

##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

제정 : 2013.10.01    개정 : 2023.10.16  
개정 : 2014.07.01    개정 : 2024.03.01  
개정 : 2015.06.17  
개정 : 2016.03.01  
개정 : 2016.12.01  
개정 : 2017.07.01  
개정 : 2020.03.01  
개정 : 2021.12.01  
개정 : 2022.06.01  
개정 : 2022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문지식인 양성의 건학이념에 입각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,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관련된 각종 심리상담, 소수 학생의 대학생활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06.17., 2017.07.01., 2022.12.01., 2023.10.16.>

제2조(업무) 본 센터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<개정 2021.12.01.>

1. 각종 표준화 심리검사
2.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
3. <삭제 2022.12.01.>
4. <삭제 2015.06.17.>
5. 소수 학생의 교수·학습, 멘토링, 진로(개인)상담 및 취업준비 등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지원 <개정 2015.06.17.>
6. 지역사회 상담기관과 네트워크 관련업무
7. <삭제 2022.12.01.>

제3조(조직)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운영위원회를 두며, 전문상담사와 교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:2014.07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4조(센터운영) ① 학생상담지원, 소수학생 지원 업무를 주된 업무로 진행한다. <개정 2015.06.17., 2022.12.01., 2023.10.16.>

② 학생 개인진로(취업), 학업, 신상, 고민 등의 기본적인 상담은 학과 지도교수를 통하

여 실시하고,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시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.

③ <삭제 2015.06.17.>

④ 전문상담사는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16.12.01.>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통괄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교무처장, 학생생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생과 교직원으로 9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16.03.01., 2017.07.01., 2020.03.01., 2022.06.01., 2022.12.01., 2023.10.16., 2024.03.01.>

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3.10.16., 2024.03.01.>

④ 운영위원회 위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이 심리상담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소정의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4.07.01.>

⑤ <삭제 2022.12.01.>

제7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2. 센터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진로상담 및 개인(집단)상담에 관한 사항 <개정 2015.06.17.>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신설 2015.06.17.>
5. <삭제 2022.12.01.>

제8조(운영위원회 회의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해당 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로 소집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9조(운영위원회 사무) 운영위원회의 사무는 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며, 회의결과를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당해 지원 실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제10조(정보보호) 지도교수 및 운영위원, 관련 담당자는 학생상담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

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### 3-4-6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

---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